

## 전산5급으로의 보통승진심사계획 공고

### □ 배 경

- 승진 소요연수가 경과한 우리 부 공무원의 승진을 통해 사기진작 및 조직 활성화 도모

### □ 근거 법령

- 「국가공무원법」 제40조(승진) 및 제40조의3(승진심사)
- 「공무원임용령」 제33조(승진소요최저연수) 및 제34조의3(보통승진심사)
- 「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」 제9조(승진심사계획수립)

### □ 승진규모 : 총 2명

구 분		승진예정인원	승진심사대상*	비고
전산	5급	2	16	

\* 승진후보자명부 상위자 순으로 공무원임용령 별표5의 배수 범위 내 해당자

### □ 추진일정

- 승진심사계획 공지 : '20. 11. 17.(화)
- 승진심사위원회 개최 : '20. 11. 23.(월) 전후
- 승진심사 결과 보고 및 승진임용(발령) : '20. 11. 23.(월) 이후

\* 5급의 경우 교육 이수('21년 상반기) 후 결원에 따라 순차적 임용 예정이며, 코로나 19로 인해 교육일정 변경가능

## □ 승진심사 기준

▶ 승진심사 기준에 따른 합산순위를 원칙으로 함

- (일반승진) 승진후보자명부 배수 범위 내 후보자들 중 승진후보자명부 점수(60점), 다면평가(30점), 기타(10점)의 합산순위를 원칙으로 보통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진대상자 결정

< 일반승진 합산순위 산정방법 >

구 분	배 점
○ 승진후보자명부 점수 환산	60점
○ 다면평가(최고 30점, 최저 27점)	30점
○ 기타 상훈, 징계 등	10점
합 계	100점

- \* (승진후보자명부) 근무성적평가(80점), 경력평정(20점), 가점평정으로 구성되며, 이를 60점으로 환산하여 활용. 명부 내 근무성적평가점은 4급의 경우 최근 3년, 5급의 경우 최근 2년 반영
- \* (다면평가) 직전 4회 평가결과의 평균값을 반영하되 개인별 평가 횟수가 4회보다 적은 경우 해당 평가점들의 평균값 반영('19.4월, '19.8월, '20.2월 및 '20.8월)

## □ 교육훈련시간 이수조건

- (근거)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(예규 제46호)
- (내용)
  - (의무 교육훈련시간) 산출기준일 기준,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\*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대상에서 제외
- \*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: (해당 계급 근무연수) × (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)

**< 대상별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>**

구분	일반직 4급(복수직) 이하(연구사 포함)			
	공통	예 외		
		전문경력관	관리운영직군	방호/운전/위생원
교육훈련시간	연간 100시간	연간 40시간	연간 40시간	연간 12시간

- \* 산출기준일 : 승진심사일이 속한 달의 전전월 말일 현재  
 (단, 필요 교육훈련시간 미충족자의 경우는 승진심사일 전일까지의 교육훈련시간을 합산함)
- (부처공통학습) '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' 또는 '해당 계급 근무연수 ×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'의 40% 이상은 부처공통학습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
- \* 승진임용에 반영되는 필요 교육훈련시간 중 총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함